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08호 2015. 7. 3.(금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5-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.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실. ☎ 831-2215 ·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408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5 - 86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년 7월 3일

사 천 시 장

1. 제한지역

사 업 명	위 치	면적(m ²)	도시기본 계획상	현용도지역	비 고
사천지구 항공국가산업단지 예정지	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일원 (신촌,통양,조금)	1,083,000	보전용지	계획관리,농림 ,보전,생산, 자연녹지	항공산업과 (산단조성담당)

2. 제한사유

가. 『사천지구 항공국가산업단지』 예정지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(주택 및 창고신축 등)가 신청 또는 예정인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의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장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함.

사 천 시 공 보

제408호(3)

나.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계획적·체계적인 개발(산업단지조성 등)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.

3. 제한내용 :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

- 가.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·증축(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)과 이에 따른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
- 나.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(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)
- 다. 토지의 분할, 재해예방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

4. 제한기간

- 가.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 지구 지정 시까지로 함.

5.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6. 기타 :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(☎ 055-831-3167)에 비치.